

주제회의
- 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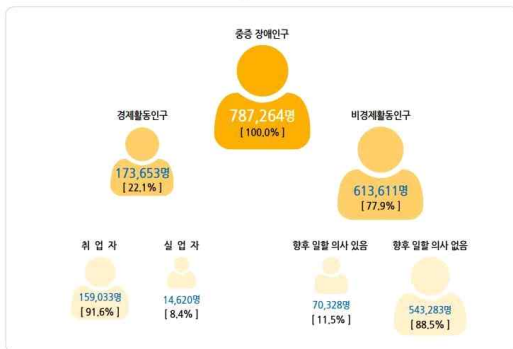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통해본 탈시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이것도 노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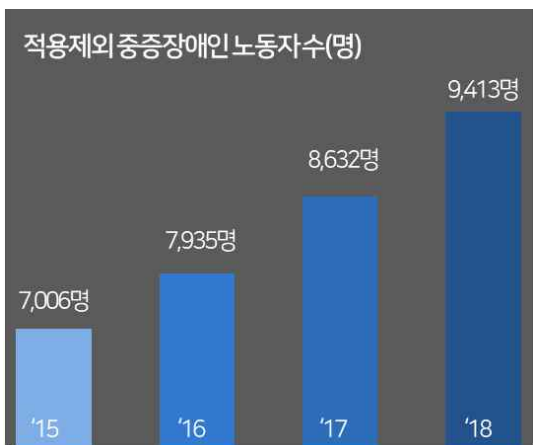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의 틀에 갇혀 직업훈련을 열심히 받아 생산 능력을 향상시켜 민간노동시장에서 ‘이것도’해보고, ‘저것도’해 보면서 일자리 찾아 삼만리 해보았지만 실패하였고, 결국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요’ 가슴을 치면서 실업자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왔다.

● 중증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구성 (15세 이상 2018)



중증장애인 실업자는 8.4%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77.9%이다. ‘향후 일할 의사 있음’ 11.5%이며, ‘향후 일할 의사없음’ 88.5%이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눈에보는 2019 장애인 통계」).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에서도 제외된다(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 실태	
평균 나이	34세
장애여성	64%
중증장애인	97%
발달장애인	82%
월평균 노동시간	135시간(일 5.9시간)
월평균 임금	37.5만원(시급 3,416원) '18년

※ 출처 :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노동자 지원방안, 관계부처합동회의자료(배포용), 2019.7.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최저임금적용제외된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에게 서울형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장애인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장애인인식개선강사 활동’의 3대 직무로 활동하는 것을 통해 ‘이것도 노동이다’라는 대안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문제의 원인은 장애인의 몸(손상)이 아니라 사회에 있다. 최종증장애인의 노동을 통한 사회변화

최종증장애인에게 일자리가 우선 보장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장애인노동정책 실패의 원인이 장애인의 몸(손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시장, 경쟁, 실적, 이윤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재활중심 생산성기준’의 일자리를 공공, 협업, 참여가능, 지역사회 변화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맞춤형’으로 이동하는 정책의 변화이다.

중증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77.9%) 중 ‘향후 일할 의사가 없음(88.5%)’을 밝힌 중증장애인들은 사회적 포기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이들도 서울형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참여를 통해 일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 사회환경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제안하는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맞춤형 3대 직무를 통해 최종증장애인의 노동을 권리로 보장함으로써,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취급되어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가 ‘권리의 주체’ 변화로 나타날 것이다.

권리중심 3대 직무

장애인고용정책 30년 최종증장애인의 일자리 정책에서 실패한 역사 딛고, 최종증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 역사의 시작



서울형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최종증장애인이 참여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교육(연습)’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 3대 직무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장애인인식개선활동’ 3대직무는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3대 직무 4가지 유형	3대 직무 4가지 유형 내용
유형1	장애인권익옹호활동 직무
유형2	장애인권익옹호+문화예술활동 직무
유형3	장애인권익옹호+장애인인식개선활동 직무
유형4	장애인권익옹호+문화예술+장애인인식개선활동 직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로 1990년 제정되어 1991년 시행되었다. 2000년에 현재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핵심적인 이유는 법 제8조(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를 새롭게 규정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의 단독적인 노력만으로 시장 내의 중증장애인 고용을 성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설립되고 시장 내 일자리 마련 등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시장 내 장애인고용정책을 통한 최종증장애인의 일자리마련은 중증장애인의 실업률과 비경제활동인구의 통계가 말하듯이 결과적으로 실패임이 증명되었다.

※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고용·교육(연습)·지원이 연결된 노동정책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온 장애인에 대해서 평생교육으로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있는 시점에서, 최종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교육·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합되는 노동정책으로 실패한 최종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

인권의 담지자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할 수 있게 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홍보대사로의 직무

“대한민국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내용과 목적을 공론화하여 교육시키지 못하였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의 담지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강화 할 수 있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을 권고한다”

위 권고문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대한민국 정부에게 권고한 내용이다.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강화 할 수 있는 인식제고 캠페인’은 최종증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서울시에서 최초로 진행하는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맞춤형 일자리의 노동을 통해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에 3대 직무를 통한 최종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보는 인권의 담지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할 의무인 것이다. 최종증장애인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홍보대사로 직무를 인정하고 이에 적합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함이 마땅하다.

서울형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와 탈시설

서울형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추진방향

추진방향

- 민간노동시장에서 생산성과 경쟁기준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 특히 『최중증 장애인』에게 참여가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서울형 공공일자리 발굴, 추진
-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장애인인식개선강사 활동’ 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해소
- 다양한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일자리를 발굴,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단체 및 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운영
- 일자리 참여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취업 및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과 연계
- 중증장애인 참여자들의 활동을 온라인(비대면) 장애인인식개선 강의자료로 활용

일자리 참여자 지원자격 및 수행직무

○ 일자리 참여자 지원자격

- 참여자는 모집공고일 전까지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이상 미취업 중증장

애인(단 복지일자리는 고3 및 전공과 장애학생 참여 가능)

- 중증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인, 특히 자폐성 성향이 강해 사회활동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 최중증장애인 및 최근 지역사회에서 탈시설한 중증장애인에게 우선적 참여 기회 제공

최중증장애인이란

- 중증장애인 중에서 장애인보조기구나 활동보조인 등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거나, 불편함을 느껴 사실상 경제적 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는 장애의 정도가 극도로 심한 장애인.
- 뇌병변장애인, 척수장애인, 근육장애인, 자폐가 심한 발달장애인, 언어 및 청각, 시각 등 중복장애인 등

- 수행직무 : 장애인권익옹호활동,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장애인인식개선강사활동

예시

- 장애인권익옹호활동 :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한 공공장소 퍼포먼스,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시 불편사항 등 각종 장애인차별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활동 등
(장애인 건강검진 의료기관 모니터링 및 접근성 조사 등)
- 장애인문화예술활동 : 장애인 미술, 사진,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참여 창작활동
(근육장애인이 직접 자신의 생각, 소망등을 표현하는 행위 예술 등)
- 장애인인식개선강사활동 :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강아공연 활동 등 (발달장애인이 교육기관에 방문하여 악기연주 등 특기 시연)

- 근로조건 및 급여(최저시급 적용 : 8,590원)

- 시간제 일자리 : 1일 4시간/주20시간/월897,660원(세액 공제전)
- 복지형 일자리 : 주14시간 이내/월56시간/481,040원(세액 공제전)

□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정책과 장애인일자리 연계추진

- 탈시설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지원

- 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원활히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을 통한 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즉 정착을 지원함.

탈시설화 정책

①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 1차 : '13년 ~ '17년(5개년) : 탈시설 인원 604명
- 2차 : '18년 ~ '22년(5개년) : 탈시설화 계획 인원 2,315명/목표 인원 800명

② 탈시설화 중요 정책과제

- 탈시설 정책추진강화 및 전환지원 체계 개선, 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개선 및 시설 변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정책과 장애인일자리 연계추진

○ 탈시설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지원

- 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원활히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을 통한 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즉 정착을 지원함.

탈시설화 정책

①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 1차 : '13년 ~ '17년(5개년) : 탈시설 인원 604명
- 2차 : '18년 ~ '22년(5개년) : 탈시설화 계획 인원 2,315명/목표 인원 800명

② 탈시설화 중요 정책과제

- 탈시설 정책추진강화 및 전환지원 체계 개선, 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개선 및 시설 변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